

# IBKS 계좌체계 및 실명확인

최근개정일: 2024.02.29

### **Key Point**

- ✓ 당사 계좌개설방법은 영업점, 스마트비대면, 은행제휴(기업/우리/하나/국민)
- ✓ 계좌개설시(신규 및 추가)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당사 양식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 ✓ 비대면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업무개요

### 가. 종합계좌

- 1)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이 투자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따라 개별상품을 추가 거래 가능하며, 하나의 종합계좌에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계좌임
- 2) 종합계좌는 각각의 개별계좌를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목적의 대표 계좌로 증권카드, 비밀번호, 거래인감(서명)은 종합계좌단위로 관리되고 있음
- 3) 고객별로 종합계좌 복수개설 가능

### 나. 계좌번호 체계 : 지점번호(3자리) + 상품번호(2자리) + 계좌번호(6자리)

계좌번호 체계 (11)		000 - 00 - 000000 - 000 지점번호 상품번호 일련번호 펀드/신탁번호 ※ 투자신탁/신탁 계좌를 제외하고는 펀드/신탁번호 없음			
	지점번호(3)	최초 개설지점번호, 계좌 관리지점은 별도 관리함			
계좌 구성	상품번호(2)	당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구분하는 두 자리 숫자로 구성된 번호 종합(00), 위탁(10), 선물옵션(20), CMA(51), 수익증권(53), 연금저축(55), 신탁(70)			
일련번호(6) 지점별 일련번호					
	펀드/신틱번호(3)	1개의 서브계좌에 1개 펀드/신탁			

### 개별상품 분류

상품 유형	상품종류	상품 번호	상품의 특징		
종합	종합계좌	00	하나의 계좌에 모든 개별상품을 연결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좌		
	위탁종합	10	주식 미수주문, 대출 및 신용거래, 공모주청약, ELS, 채권(RP포함) 및 주식관련사채 등 매매가능		
위탁	코넥스 소액투자전용	12	전 증권사 1인 1계좌로 개인만 해당되며「코넥스매매 위험고지확인」및 금융투자협회에 제공되는「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 1인계좌 확인서 및 개인(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동의하여야 계좌개설가능		
	CMA전용	51	예수금을 RP로 자동투자		
	RP매매전용	52	RP매매 전용계좌		
선물 옵션	선물옵션 (KSE계좌)	20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개별주식선물·옵션, 상품선물 매매가능 기본예탁금 필요, 파생개인투자자 요건충족 계좌에 한해 단계적 매매가능 → 채무불이행자, 미성년자/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불가		
투자 신탁	일반투자신탁	53	각종펀드개설 (세금우대, 생계형 개설 가능) ※ 펀드별 세금우대, 생계형 가입가능		
연금	UCI 7 1 *	15	연금저축 위탁계좌 (ETF거래만)		
저축	신연금저축	55	신연금저축 (펀드매매만)		
IC A	37		ISA중개형계좌 (주식매매, 입출금)		
ISA	중개형ISA	57	ISA연계펀드계좌 (펀드매매만)		
일임형	WRAP	10	위탁계좌에서 WRAP약정 신청한 계좌		
= 급급성	신탁	70	신탁 전용계좌		

## 3 개설 가능 상품 / 가능시간

### 가. 당사 영업점 / 비대면 개설

1) 영업점 개설 : IBK투자증권 영업점에서 당사직원이 실명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 말함 2) 비대면 개설 : IBK투자증권 영업점이 아닌 비대면 계좌개설 웹을 통해 실명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를 말함

구 분	지점번호	ODS	대리인	NET	개설가능상품
영업점개설	센터별상이	0	0	x	전상품
비대면개설	521	x	x	x	종합계좌(00), 위탁종합(10), CMA(51), 수익증권(53), 신연금저축(55), 중개형ISA(37,57)

### 나. 은행제휴계좌 개설

IBK투자증권 영업점이 아닌 제휴 실명확인대행기관(은행)을 통해 실명확인 후 개설된 증권계좌를 말함

	개설은행	지점 번호	증권제휴 카드발급	예수금 관리	가상 계좌	대리인	개설가능상품
	기업은행	501	0	증권	0	0	종합(00),위탁(10) 선물옵션(20),수익증권(53)
	기업은행 비대면	511	Δ	증권	0	Х	종합(00),위탁(10)
기 업	IBK주식투자통장	551~556	X	은행	X	X	종합(00),위탁(10)
은	IBK주식거래캐쉬백통장	557	X	은행	X	0	종합(00),위탁(10)
행	IBK주거래생활금융통장	558	Х	은행	X	0	종합(00),위탁(10)
	IBK기업증권거래통장	561	Х	은행	X	0	종합(00),위탁(10)
	IBK주식적립통장	571	Х	은행	Х	X	종합(00),위탁(10)
	우리은행	502	Δ	증권	Δ	법정 대리인만	종합(00),위탁(10)
하나은행		503	х	증권	0	0	종합(00),위탁(10) 선물옵션(20)
	국민은행	504	0	증권	0	법정 대리인만	종합(00),위탁(10)

- \* IBK주식투자통장(551~556), IBK주식적립통장(571)은 신규 개설 불가, 기존 가입고객은 유지
- \* 기업은행 비대면(511) : 은행 영업점 내점 신청시 증권제휴카드발급 가능
- \* 우리은행(502) : 증권제휴카드 발급여부 선택 가능하며, 발급 시에만 가상계좌번호 부여함

### 다. 온라인 개설

- 영업점 및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근거계좌)를 개설한 고객에 한하여 영업점을 추가 방문하는 불편 없이 HTS/WTS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개별 상품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말함

구 분	지점번호	ODS(파출)	대리인	NET	개설가능상품
온라인	근거계좌 지점번호	x	×	×	위탁종합, CMA, RP매매전용, 수익증권

\* 온라인개설은 영업점 또는 은행제휴에서 개설한 근거계좌가 있어야 함, 단, CMA는 은행제휴개설계좌 불가

### 라. 개설 가능시간

1) 영업점: 영업일, 영업점 업무시간 내

2) 비대면: 365일, 08시 ~ 23시 3) 온라인 : 영업일, 08시 ~ 21시

4) 은행제휴개설 : 영업일, 은행 업무시간 내

### 영업점 실명확인 업무

### 실명확인 원칙

□ 계좌개설시(신규 및 추가)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당사 양식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다만,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기 실명확인된 실명확인증표 재사용 가능 단, 전산인자로 실명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 생략할수 있음

- □ 계좌개설 시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실명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보관
  - \* 기징구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관련서류 재사용 금지
- □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확인함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위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유효기간 3개월로 동일)하며,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인감날인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 □ 가족대리시 징구하는 가족관계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족대리인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포함)
    - \* 형제,자매 등은 포함되지 않음
  - 가족대리인 확인서류 미지참시 일반대리인 방문시 징구서류로 갈음하여 처리할 수 있음

### 가. 실명확인에 필요한 관련서류

1) 개인 / 일반법인

ᅎᅌᄓᆛᅱᆌᅜ		개인	일반법인		
종합계좌개설	본인	가족대리인	일반대리인	대표자	일반대리인
계좌주 실명확인증표	•	•	•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	•	-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	-	•	-
가족관계 확인서류	-	•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위임장	-	-	•	-	•
인감증명서	-	-	•	-	•
당사양식	계좌개설신청/	너, 거래인감/서밍	\$		

- \* 가족대리인(법정대리인)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친권자확인용)
-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 **법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처리시 위임장란의 인감은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법인인감**을 날인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인감계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인감 날인가능

### [참고] 관련서류 징구시 확인사항

### □ 미성년자 계좌개설시 유의사항

-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9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한 경우에는 성년에 준해서 업무처리 가능. 단, 선물옵션 계좌개설은 불가함
- 미성년자 계좌개설은 법정대리인 및 가족대리인만 가능 만 14세미만 아동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는 미성년자 계좌개설 징구서류에 준함
- 법정대리인을 본인으로 간주하여 업무처리 가능 (친권자의 한해서 파출허용)
- □ 법인명의로 개설되는 법인계좌는 반드시 인감만 가능함(대표자 서명 불가)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 접수시 처리절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본인이 서명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종이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수임인란에 기재된 수임인(대리인)이 방문해야함. 사용용도는 자세히 기재되어야 하며, 수임인란에 기재된 주소와 수임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상 기재된 주소가 다를 경우 업무처리 불가. 단, 변경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징구시 가능
- 위임장은 본인(계좌주)이 직접 작성해야하며 위임장의 위임인날인은 거래인감을 날인한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령시 본인(계좌주)과 통화하여 위임장의 위임내용 및 위임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군인실명확인증표에서 장기하사관 이상의 신분증 및 비밀취급인가증 제외 (13.01.22) (협-컴플라이언스-13-0032 실명확인 관련 유권해석 안내)

### 2) 고유(납세)번호 부여단체 / 고유번호 투자조합 / 임의단체

T-1-1-1-					
종합계좌개설 		징구서류			
고유(납세)번호	대표자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고유번호(납세번호)증 사본		
부여단체	대리인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개인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날인)		
고유번호	대표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투자조합 규약서     위임장 + 사용인감계(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날인)		
투자조합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지금성 두 시흥한금계(합성조합권의 합한한금호한)     집행조합원의 사업자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집행조합원의 등기부등본		
임의단체	대표자 • 대표자 실명확 <sup>(</sup> 임의단체		• 임의단체 확인서류 ① 단체정관 ② 대표자입증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③ 조직구성원 명부		
	대리인	• 대표자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ul> <li>임의단체 확인서류 (①,②,③)</li> <li>위임장</li> <li>법인 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li> </ul>		
당사양식		• 계좌개설신청서, 거래인감/서명			

### 나. 실명확인 의무

- 1)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 2)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
- 3) 방문 고객의 신분증이 흐릿하여 본인여부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부하여야 함

### 다. 실명확인 진위여부 확인 절차

- 1)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진위여부 확인
  - 신분증 스캐너란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을 신분증 발급기관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등록정보와 비교하여 진위확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업무임
  - ② 업무처리절차 및 내용



구 분	내용
진위 확인 정보	• 주민등록증 : 성명, 주민번호, 발급일자, 사진 • 운전면허증 :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발급일자, 사진 * 신분증 상의 사진 특징점을 추출하여 발급기관 DB와 대조
업무 처리 방법	<ul> <li>신분증 이미지 스캔 후 진위확인         <ul> <li>실명확인번호 또는 계좌번호 입력 후 이미지 스캔</li> <li>신분증 추출정보 이상 유무 확인 후 진위확인 버튼 클릭</li> <li>진위확인 응답정보 정상 시 전송 버튼 클릭: 신분증 등록 및 저장</li> <li>※ 진위확인 오류 시 "ARS 1382 / 운전면허진위확인사이트" 이용하여 진위확인 후 추가정보 등록 후 전송 버튼 클릭</li> </ul> </li> <li>진위확인내역 전송 후 전표출력 버튼 클릭. 신청서상에 진위확인내역 인자</li> <li>잘못된 실명확인번호 및 계좌번호로 신분증 저장시 당일에 한해 말소 가능 (말소된 이미지는 조회 불가)</li> <li>처리일 이후 실명확인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오류 발견시 오류 정정 요청 협조문 발송</li> <li>※ 성명, 실명번호, 면허번호, 발급일자 등 수정 후 진위확인 결과 응답정보 오류일 경우 실명확인증표로 사용 불가</li> <li>사진매칭 실패 시 위조 식별기를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후 ARS 1382, 면허증 진위추가정보확인 및 확인내역 등록하여 전송(저장) 처리 → 추가확인도 오류로 미저장시 실명확인 증표로 사용 불가함, 계좌개설 불가</li> </ul>

### 2)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진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위조 식별기를 통해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

구 분	내용
주민등록증 문양	<ul> <li>바탕무늬         왼쪽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이 있음</li> <li>홀로그램 무늬(위·변조 방지 무늬)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의 선으로 둘러싼 무지개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무늬가 있으며 여러 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있음</li> <li>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홀로그램 외에 KDL 문자, 꽃문양 마크 등을 통해 확인가능</li> </ul>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ul> <li>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자가 나타남</li> <li>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li> <li>사진을 변조(원래 사진위에 다른 사진을 덮어 씌움)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음</li> <li>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서체)이 조잡함</li> </ul>

### 3) 인터넷을 통한 진위여부 확인방법

###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발급 / 본인서명발급 / 주민등록초본/ 인터넷발급문서

(a) ARS: 1382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b) 인터넷 : 정부24(www.gov.kr)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 ❷ 운전면허증 (구면허증인 녹색면허증은 사용불가)

(a) 인터넷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

운전면허증 발급 → 운전면허정보조회 →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

\* 확인방법 :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입력

\* 주의 : 운전면허증 작은 사진 아래에 암호가 있는 경우 반드시 암호를 입력하여 진위 확인

### 업 법인인감증명서

(a) 인터넷: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법인 > 발급확인하기 > 인감증명서

\* 확인방법

(법인대표가 **개인**인 경우) 인감제출자-법인대표자 이름 입력 , 주민등록번호-법인대표주민번호 입력 (법인대표가 법인인 경우) 인감제출자-대표법인 이름 입력, 생년월일-대표법인 사업자번호 입력

- \* 주의
- 법인사업자 이름을 증명서상의 이름과 똑같이 입력(띄어쓰기까지 포함하여 똑같아야 함)
- 생년월일에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시 "-" 까지 포함하여 입력(예시: 123-45-67890)

### ④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경우 하단내용 참고하여 병행 확인(행정자치부 요청사항)

- (a) 고객이 공무원증을 제시할 경우 주민등록증 병행 확인
- (b) 실제 발급된 공무원증인지 여부는 공무원증 발급기관에 연락하여 확인
- (c) 공무원증 재직 여부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로 확인

## 비대면 실명거래 방법

### 가. 비대면 실명확인이란?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 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

- 나, 비대면 실명확인 적용 대상자
- 1) 명의자 본인에 한정하고 대리인은 제외함
- 2) 비대면 실명확인의 적용 대상으로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하나, 금융회사는 위임·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검증을 위해 대면 확인이 바람직
- 다. 비대면 실명확인시 인정 대상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5 위임전결 / 관련규정

- 가. 위임전결: 업무팀장 전결
- 나. 관련근거
- 1) 종합계좌 거래약관
-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3) 주민등록법
- 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 관련화면

### 가. [2740] 고객 신분증 및 인감서명 등록

1) 화면설명 : 고객 신분증 이미지 스캔 후 진위확인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임



### 2) 처리설명

### ● TR.2740 고객 신분증 진위 확인 후 계좌개설 시 TR.2100 연동버튼 클릭

- 신규 계좌개설시 실명확인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로 인하여 해당 신분증과 개설계좌의 주민등록번호 동일 여부 확인 불가
- TR.2740 화면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후 TR.2100 연동버튼 클릭시 진위확인 완료된 주민등록번호 연동되어 주민등록번호 오입력 등의 오류 예방
- ❷ 신분증 확인 업무시 TR.2740 고객 신분증 진위 확인 완료 및 전송(저장) 후 신분증 복사본 첨부 불필요
  -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 이용이 가능하더라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출 최소화 필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처리)

### 나. [2741] 고객 신분증 및 인감서명 등록

1) 화면설명 : 고객 신분증 및 인감서명 조회/인쇄하는 화면임



### 2) 처리설명

### ● 신분증

- 실명확인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클릭하여 조회 최근일 등록한 신분증 표출 (하단 신분증 등록현황의 신분증 등록일 더블클릭시 해당일자 진위확인내역 확인 가능)
- 필요시 신분증 인쇄 가능(주민번호 뒷자리 및 운전면허번호 마스킹 처리)

### ❷ 인감/서명

- 계좌번호 입력 후 전송 클릭하여 조회

### 다. [A003] 고객 신분증 진위확인 이력 조회

- 1) 화면설명
- [신분증 등록내역] 진위확인 결과 정상 전송(저장) 처리한 내역 조회



- [신분증 진위확인내역] 진위확인 실행한 내역에 대해 정상/오류 전체 조회



### 실명확인방법

### 1. 실명확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 식별이 곤란한 경우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해야 함

### 2. 실명확인자 :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직원

-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 및 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사 영업부서 포함) 직원이며, 본사 후선 지워부서 직원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으나. 본사 부서 근무 직원에게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는 가능
-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등은 실명확인을 할 수 없음
- 3. 실명확인증표 :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가. 개인 : 주민등록증이 원칙

•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표도 가능

### 나, 법인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납세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은 동일 금융회사 등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경우 사용 가능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 또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법인 또는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 다. 임의단체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는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으로 실명확인하고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 금융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 불가)
- □ 사원증 + 주민등록 초본
- □ 전역증, 휴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

### 4. 실명확인자의 확인

• 실명확인자가 관련 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 생략 가능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 실명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 참고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 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 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소득세법」에 의 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 ·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다.

- 1. **개인**의 경우
  -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 서류
    -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 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에 의하여 확인한다.
  -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중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 · 서류

#### 참고3 금융실명법 위반시 제재 기준

- □ 관련자 구분
  - 행위자 :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공모한 자 및 위반행위에 적극 개입한 자
  - 감독자 : 위반행위인 그 업무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
  - 보조자 : 위반행위에 단순 가담하거나 지시를 추종한 자
- □ 관련자 조치기준
  - 위반행위 당시 거래금액 기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제재

책	임 정 도	행 위 자	보 조 자	감 독 자
	5천만원 이하	견책	주의 이하	주의 이하
유형①	3억원 이하	감봉 이상	가브 이상	가브 이士
	3억원 초과	정직 이상	감봉 이하	감봉 이하
	유형②	주의 이하	-	-

\* 유형① : 차명거래, 고객 동의 없는 임의계좌 개설 등 금융실명거래의 기본 취지를 위반

유형② : 실지명의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거래로서 단순절차를 위반(단순절차 위반행위사항을 시정하는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현지조치 포함) 가능)

□ 제재 가중

- 금융실명법 제3조 위반행위 관련 계좌수가 5계좌 이상인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음
- 제재를 받은 자가 다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음

종류 구분	면 직	정 직	감 봉	견 책
신 분 상 조 치	파 면	정직기간 + 18월간 승격·승급불허	감봉기간 + 12월간 승격·승급불허	6월간 승격·승급불허



# ▼ 제・개정이력

제·개정일자	재·개정 내역	검토부서	작성부서/작성자
2024-02-29	· (제정) 업무매뉴얼 전면개편	WM지원부	업무개발부김영수